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

[대구지방법원 2020. 9. 10. 2020구합22635]

【전문】

- 【원 고】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(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)
- 【피 고】 김천시장
- 【변론종결】2020. 8. 13.

【주문】

1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- 【청구취지】피고가 2020. 3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.

[이유]

- 】1. 처분의 경위
- 가. 원고는 2016. 7. 20. 액상비료 제조 및 도·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, 2018. 11. 9.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김천시 (주소 생략)에 있는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(액상의 경우만 해당)(51-38-03)을 재활용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.
- 나. 피고는 2019. 12. 12.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한 후,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, 2020. 3. 19. ① 보관시설을 임의증설하여 폐기물보관(변경허가 미이행)(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)(이하 '제1 처분사유'라 한다), ②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미준수(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, 제13조의2)(이하 '제2 처분사유'라 한다), ③ 폐기물 재활용 전 사전 분석·확인 미이행(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)(이하 '제3 처분사유'라 한다), ④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미작성(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)(이하 '제4 처분사유'라 한다)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, 위 위원회는 2020. 4. 27.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.

【이유】

11. 처분의 경위

다.

가. 원고는 2016. 7. 20. 액상비료 제조 및 도·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, 2018. 11. 9.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김천시 (주소 생략)에 있는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(액상의 경우만 해당)(51-38-03)을 재활용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나. 피고는 2019. 12. 12.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한 후,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, 2020. 3. 19. ① 보관시설을 임의증설하여 폐기물보관(변경허가 미이행)(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)(이하 '제1 처분사유'라 한다), ②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미준수(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, 제13조의2)(이하 '제2 처분사유'라 한다), ③ 폐기물 재활용 전 사전 분석·확인 미이행(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)(이하 '제3 처분사유'라 한다), ④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미작성(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)(이하 '제4 처분사유'라 한다)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-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, 위 위원회는 2020. 4. 27.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